

르뽀기사의 윤리 · 법제적 책임

유일상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I. 르뽀기사의 특성

1. 르뽀기사의 개연과 특성

에드윈 포드(Edwin H. Ford)는 「르뽀기사란 독자들이 어떤 사실들(facts)이나 특정의 사건(event)을 보다 잘 체험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수한 기사제공방식(presentation)」¹⁾이라고 정의한다 그의 정의를 새삼 기술해 두는 것은 르뽀기사가 독자들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드라마적 요소나 증언기법까지도 과감하게 동원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르뽀기사는 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록자와 독자가 동일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켜 공감한다는 점에서 해석적 보도(interpretative reporting)의 지평을 넘는다. 르뽀형식의 기사가 유행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는 종래의 보도관행이 객관성의 신화를 쫓아 피상화되는 과정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독자들의 제 1 차적 지각만을 자극했던 점을 반성하는 의미도 있다. 말하자면 르뽀기사는 과거의 전통적 보도양식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서 넓게 말하는 뉴 저널리즘(New Journalism)의 좋은 예가 되는 것이다. 뉴 저널리즘의 구체적인 표현양식으로서 르뽀기사는 몇 가지의 기술적 특성이 있다. 즉 드라마적 문학표현기법(dramatic literary technique), 심층적보도(intensive reporting),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관적 보도(subjective reporting) 등 3 개의 기본적 특성을 가진 예술적, 창조적, 문학적 보도형식이다. 3 개의 특성은 문체적으로 볼 때 독특한 듯 하지 만 공통적인 형식요소를 갖추고 있다.²⁾ 즉 뉴 저널리즘은 드라마적 문학표현기법을 사용하여 기록자의 관심을 드러내고 상당한 정도까지 심층적인 보도를 행함으로써 주관적인 입장까지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3 가지 특성이 결합되기 쉽다는 뜻이다.

2. 르뽀기사의 4 대 표현기법

르뽀기사는 장면별 구성(scene-by-scene construction), 대화의 전면적 기록(full record of dialogue), 제 3 자적 시각(third-person point of view), 묘사적 사건 명세(detailing of descriptive incidental) 등의 4 가지 표현기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기록자가 사건을 극화하고, 독자가 관심과 흥미 속에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게 유도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들이다.³⁾ 첫째, 장면별 구성기법은 구술과 극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된다. 르뽀기사에서 기록자는 허구의 소설 같은 형식을 빌어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장면별 구성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는 상상력을 제공한다. 둘째, 대화의 전면적 기록방식은 묘사적 방식보다도 대화가 관련 인물들의 성격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는데 착안하여 극적인 효과를 보강해주는 역할을 한다. 숙달된 소설가들이 생생한 대화를 소설구성 속에 넣는 것과 같은 맛을 내는 르뽀기사의 대화형식들은 장면별 구성기법과 함께 사실주의적 기법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제 3 자적 시각은 기록자가 독자로 하여금 제 3 자의 눈으로 사태와 행동을 살핌으로써 기록자가 아니라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의 고유한 특성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찰방법이다. 울프(Wolfe)는 뉴 저널리즘을 1 인칭적 보도관행으로 잘못 개념 정의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제 3 자적 관점의 보도가 르뽀형 보도임을 거듭 밝혔다.4) 그는 특히 비평가들이 르뽀 기사를 비롯한 New Journalism 을 목격적 보도, 내부적 저널리즘, 주창 저널리즘(advocacy journalism)이나 재인적 증언기법의 기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르뽀기사가 제 3 자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사건이나 사태에 접근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넷째, 묘사적인 사건명세 방법은 일명 사회적 해부라고도 불리는 사건 파헤치기 방법이다. 기록자는 대상자의 생애, 태도, 기타 이력과 배경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고조시킨다. 기록자가 독자들이 더욱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제시하게 되면 독자들로 하여금 정보를 조립하고 사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나 사건의 상황에 대한 내면적 통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심층적 르뽀기사

뉴 저널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소설적 기법을 활용하여 르뽀기사는 대체로 심층적 취재와 깊이 있는 전달을 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심층적 르뽀기사(intensive reportage)를 르뽀기사의 특성으로 다시 분류해 내는 것은 차별성이 없겠으나 일반 르뽀기사에 비해 심층성 정도의 문제가 크므로 고려할 만하다. 심층적 르뽀는 소설적 기법을 보충하여 문체를 가다듬고 주제와 사건에 대해 긴 시간을 두고 관찰과 접근을 행한 후에 기사를 작성한다. 전쟁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참전의 위험을 무릅쓰든지, 마약단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마약중독자들을 면담하고 물증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일 등은 심층적 르뽀기사 작성을 위한 기록자들의 분투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심층적 르뽀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록자는 기록대상세계에 직접 투신하거나 사건에 개입하기도 한다. 또한 르뽀기사의 4 대 표현기법을 동원하여 심층적 르뽀기사에 대화는 물론, 자문자답이나 사회적 실체검증(social autopsy)까지 등장시켜 심층적 집중보도(saturation reporting)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심층적 르뽀는 보도대상자의 내면상태나 의식의 흐름까지도 헤쳐볼 수 있는 것이다.

4. 주관적 르뽀기사

주관성은 르뽀 기사를 공격하는 용어로서 꽤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르뽀를 포함한 뉴 저널리즘의 보도기법들은 한결같이 전통적인 보도관행에 대한 반작용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비판자들로서는 르뽀 기사를 주관적 보도로 몰아부치고 의시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 저널리즘에서는 객관성을 내세워 보도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나 사태의 진상을 완벽하게 재생하고, 기자의 개인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지레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존 허시(John Hersey)가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언론의 기만적 전통」5) 일 뿐 인간생활과정을 볼 때 완벽한 전달이 불가능한 일이다. 인류의 생활은 너무나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인간이 전체를 보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는 어려운 일이다. 기록자가 10 중 9 를 선택한 순간, 그는 이미 그의 견해로 취재된 정보를 채색해 버린다. 그래서 객관보도는 언론인들이 보도실무상 마주치게 되는 위협이나 위협을 통일된 방법으로

극복하기 위한 직업상의 전략적 의식으로 격화된 지 오래라는 것이 학자들의 지적이고 보면 6), 주관적 르뽀기사가 전달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조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주관적 르뽀기사는 가능한 한 철저하고 정확하게 사태나 사건을 재생함으로써 전달기법상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도로서 독자들이 진실을 발견하고, 진리에 도달하는 길을 찾도록 안내하는 기사유형인 것이다. 다시 말해 르뽀기사는 진리에 접근하는 독특한 방법이며 문체(Style)라는 뜻이다.

II. 르뽀기사의 장단점

1. 르뽀기사의 장점

첫째, 르뽀기사는 어떤 사건이나 사태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사건의 발생과 뉴스 전달간에는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사건 자체의 당사자와 보도수용자간에는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없는 것이 현대의 언론환경이다. 이때 대중적 대양적 전달자로서의 언론기관은 전통적인 보도방법만으로는 그 사회적 소임을 완수할 수 없다. 더구나 전통적인 뉴스가치는 사건이나 사태의 본질을 탐색하기보다는 일정한 직업적 표준에 따라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형식적인 보도관행에 따르도록 언론인을 순화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다. 흔히 사건의 기사화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뉴스밸류는 뉴스의 특성 또는 뉴스의 요소를 잘 묘사하고 있다. Bleyer는 7) 적시성, 흥미성과 중요성을 뉴스밸류로 손꼽고 있지만 Hohenbergs⁸⁾와 Charnleyg⁹⁾는 여기에 정확성을 덧붙인다. 한편 Wesley¹⁰⁾는 근접성, 특출성, 영향성, 갈등성을 뉴스의 특성 중에 기본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날 가장 많은 보도기관과 그 구성원들이 보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Macdougall에 의해 주장된 것이다.¹¹⁾ 그는 적시성, 근접성, 저명성, 영향성, 흥미성 등이 보도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보았다. The Times의 편집인을 역임한 H. Evans는 그의 저서 보도실무론(The Practice of Journalism)¹²⁾에서 뉴스가 곧 인간이라고 갈파했고, S. Hood는 뉴스감각이란 우리 사회의 의견형성기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언어와 마음가짐(attitudes)을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한다.¹³⁾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전통적인 뉴스가치는 보도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을 막는 비가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르뽀기사는 전통적인 보도가치가 이끌어 낼 수 없는 인간중심적 측면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와 태도의 판단능력을 갖춘 훌륭한 보도형식이 될 수 있다. 둘째, 르뽀기사는 문학과 저널리즘 간의 상호결점을 보완하여 언어의 함축능력 부족을 채워줄 수 있다. 문학은 대체로 현실을 지나치게 추상화하거나 세련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문리에 있어서는 뛰어나나 역사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저널리즘은 문학을 기초로 하는 것이지만 기교에 빠짐으로써 전달자의 전달능력을 과시하는 데는 적절하지 만 수용자와 함께 살고 있는 세상과 역사를 증언하는 힘이 부족하다. 르뽀기사는 사건보다 장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문학적 표현기법을 동원하는 동시에 문체와 표현능력 면에서 저널리즘이 감당하지 못하는 더 큰 자유를 통해 보도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간다. 르뽀기사는 언어가 가진 힘의 본영 속에서 그 힘을 기초로 기록자의 현장감을 살리고 기사의 요점나열형 소구방식을 탈피하여 부드러우면서도 시적으로, 때로는 처절하고 때로는 감미롭게 사태를 묘사하고 수식한다. 그래서 여기에 전통적인 저널리즘 표현을 보충한다면 기록자와 독자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질과 양의 측면에서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르뽀기사는 새로운 체험문학적 요소를 도입하여 전통적인 보도기법이 취하는 자료나 정보의 편린을 전달의 기본단위로 하지 않고 장면을 보도단위로 취급한다. 그래서 르뽀기사는 산문적 표현방식의 정교한 전략을 사용하므로 사실적 묘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말하자면 전통적인 뉴스가치로는 사태의 미묘한 전개과정, 장기적 추세 등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events)보다는 절차(process)를 주목한다는 점이 르뽀기사의 중요한 장점이라는 뜻이다. 미국의 포드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아시아 13개국의 신문단체가 가입하고 있는 아시아신문재단은 개발의 목적을 수행하는 개발도상국 언론인들이 탐색적 보도에 숙달된 새세대 언론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제문제, 인구문제, 개발문제 등의 뉴스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종전과는 다른 기사취재 및 전달기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14) J. Turow는 뉴스가치가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건들을 보도하는 기술로서 삶의 긴박한 모습보다는 통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라이프스타일 묘사와 같은 연질뉴스나 피쳐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S)위의 주장들에 비추어 르뽀기사는 제 3세계의 개발 이데올로기를 가공, 전파하는 개발매체의 경우에 기사로서의 적합성 정도가 비교적 높은 표현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넷째, 르뽀기사는 사태에 대한 쉬운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매일매일 명멸하는 수많은 사건들의 배경이나 내포적 의미를 모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의 현실을 오판할 수 있다. 르뽀기사는 상황과 관련된 개별정보의 의미를 해설해 줌으로써 비전문적인 독자들이 보다 쉽게 사태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사태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건의 여러 측면을 제시하고 거기에 적절한 해설을 덧붙일 때 가능한 것이지 객관적 보도와 같은 비현실적인 이상을 추구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르뽀기사의 해설적 역할은 객관성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적 의미를 갖고 있는 객관보도의 허상을 깨뜨리는데 불과한 것이다. 인간의 정신능력에 비추어 사건 모두를 제시해 준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꿈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사태를 분석하고 사건이나 사태의 의미를 판단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르뽀형식의 기사가 해설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르뽀기사의 단점과 그 대책

르뽀기사가 갖는 단점은 장점의 반대측면들로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심층보도를 빌미로 흥미본위적인 조사보도로 빠질 우려가 있다. 흥미적인 조사보도가 될 때 기사내용은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전문분야에 식견없는 경솔한 사건탐색에 그치게 한다. 또 조사보도는 보도자 또는 보도기관이 독자적인 취재의 명분으로 자신을 공권력으로 위장하는 경향도 있어서 도덕적인 속임수를 쓴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르뽀기사를 심층적인 보도기술이라고 믿는 기록자들이 빠질 수 있는 미묘한 사태로서 그가 르뽀기사의 주인공에게 지나치게 동정적인 나머지 공정성을 잃는 기록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독자들에게 강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록자가 빠지게 되는 이와 같은 함정은 오히려 조사보도의 진정한 가치를 추락시키게 된다. 르뽀기록자들은 때로 영웅과 악한을 만들어 내고, 주의주장을 목청 높여 외치게 하며, 기사에다 편견을 채색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줄이기 위해서 르뽀기사가 반드시 심층보도에의 지향욕구를

줄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르뽀기사의 단점을 우려하여 심층보도를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기록자가 끊임없는 자기검증으로 기사의 심층성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기록자가 더 신중하게 처신한다면 이 단점은 어느 정도 보완될 수도 있다. 즉 기록자가 많은 사회적 책임을 느끼며 자기훈련을 계속할 때 르뽀기사의 질적 수준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둘째, 르뽀기사는 문학의 표현기법을 빌어오는 과정에서 허구의 사실을 날조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보도는 모름지기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그 첫번째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가공적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은 대중적, 사회적 속임수가 된다. 르뽀기록자는 자신이 정색할 수 없는 정보는 문자 화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글재주를 이용하여 허구를 창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언론윤리적으로 볼 때 언제나 허보(false light)에 대한 주의력을 집중해야 한다.

셋째, 르뽀기사는 때때로 감각적인 폭로를 통해 독자들을 매료시키고 독자들로 하여금 냉담자가 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언제나 선전선동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문학평론가 임우식 씨가 「문학과 사회」 1990년 여름호에 기고한 「노동문학, 생활과 운동의 교환양식」이란 글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르뽀문학은 목적의식적 문학으로서 모험주의, 도식주의, 과격주의에 치우쳐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르뽀기사도 때로는 특정 신념이나 이데올로기 의 전파수단 또는 특정 한 목적 의 식을 갖고 쓰여 졌을 때 보도가 갖는 현실적 규정력을 이용하여 독자들에게 생활의 진실성을 오인하게 할 염려 또한 크다. 필자는 임우식 씨의 글에 대한 전적인 동의를 유보하지만 르뽀기사가 계도성을 그 지향목표로 삼을 때 빠져들 오류의 밧을 분명하게 경계하고 싶은 뜻에서 이 단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III. 르뽀기사의 윤리적·법적 매임

르뽀기사가 일으킬 수 있는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기록자에게 돌아가겠지만 그 근원은 르뽀기사가 안고 있는 구조적 결함에서부터 찾아질 것이다. 특히 르뽀기사는 심층적, 탐색적 취재과정과 해설적, 의도적 전달과정에서 재민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일정 정도 침해할 가능성이 항상 있게 마련이어서 기록자로서는 신중하고 사려 깊게 사태에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 만일, 기록자가 사리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주의하지 않고 기사화한 내용들은 사회적으로 해악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제재를 받게 되고 기록자의 평판을 좋지 않게 이끌어 간다. 따라서 르뽀기사 작성자에게는 객관적 보도관행이 갖고 있는 피상성을 뛰어넘어 독자들에게 봉사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르뽀기사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한데 묶어 사리를 판단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숙고하자는 뜻에서이다.

1. 르뽀기사의 진실성 판단

뉴욕 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1964) 이후 많은 판례들은 기록자가 현실적 악의를 갖고 기사화를 피했는가 의 여부를 따지고 있다. 만약에 르뽀기록자가 진실에 대해 경망스럽게 무시하는 태도(breckless disregard of truth)를 취했다면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경망스러운

진실무시행위란, 기록자가 발설자의 진실성 또는 그 발표의 정확성에 대해 상당한 주의로서 의심을 품을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된다.16) 공공적인 문제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살아 남기 위한 최소한의 숨쉴 공간(breathing space)으로서 약간의 잘못된 발표를 보호하지만 진실성을 고의적으로 또는 경망스럽게 무시했을 경우에는 기록자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고의란 일반적으로 말해서 불법행위가 의도적으로, 알아들을만하게 그 정을 알면서(knowingly) 또는 죄의식을 가지고 행해졌음을 뜻한다. 살피건대 진실성을 이처럼 고의로 무시했을 때는 물론이려니와 경망스럽게 무시했을 때도 르뽀기사 기록자는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이 이성을 잃고 언론의 자유를 억누를 소지가 있는 곳에서는 진실무시행위의 고의성과 경망성을 충분히 정토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록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물을 소지는 있다. 그러나 르뽀기록자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신의 성실하게 보도의 진실성을 믿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타인이 제기한 공격에 동조하거나 이를 변형시켜 공공인물에 대해 자기자신이 공격을 보냈을 경우에는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17)기사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거나 적시된 사실에 진실성이 결여됨으로써 사법적 책임을 지게 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자가 특정이해당사자 중 한쪽의 정보제공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경우(대판지판, 1972,판례시보 679 호, 47 면) ② 허위의 소문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신문기사는 공정한 보도의 특권 또는 중립적 보도의 특권을 가질 수 없다(Martin v Wilson Publishing Co. 497 A. 2d 322. 1985)③명예훼손적인 내용에 대해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고 재발표 한 경우에 최초의 발표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Olinger v. American Savings and Loan Assn. 1969) ④언론기관에 허위정보를 제공한 자도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札幌지재 소 54(ㄱ)594 호소 56. 3. 26 제 4 부 판결)진실성을 무시한 언론행위는 불법행위로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적인 문제이거나 공적 인물과 관계되는 부분은 보호되어야 할 것인 바 진실의 무분별한 무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발표의 진실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믿음이 없었다는 입증보다 더 엄격할 것을 요구 받는다. 단지 나쁜 의지를 가지고 손해를 유발할 의도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표행위를 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적 내용이 공공의 관심사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경우, 현실적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을 할 필요도 없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르뽀 기사를 작성하는 기록자의 입장에서는 고의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 겠다.

2. 르뽀기사의 공공성 판단

르뽀기사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주제가 공공적인 문제일 때이다. 어떤 문제가 공공의 관심사를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표현을 포함한 전체기록의 내용, 형식 그리고 문맥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르뽀기사가 기록자와 특정사업자 또는 특정집단에 속한 수용자의 개별적 이익을 위한 표현이라면 그것은 공적인 성격을 갖지 못한다. 예컨대 이러한 특정적 이익에 관련된 르뽀기사가 허위사실에 근거하고 명백히 특정인의 사업상 평판이나 개인적 평판을 실추시키는 경우에는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단」 특히 우리 형법은 명예훼손적 연설의 공연한 전파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형법 제 307 조). 공연성에 관한 판례들은 대체로 전파의 가능성을 따지고 있다. 전파의 가능성 면에서 볼 때 언론에 의한 기사화는 어떤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에 의한 공표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의 법익을 충분히 배려한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 아래서 개인의 존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할 수 없고 또 타인의 사사로운 사정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명성을 추락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르브르기사가 공공성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① 사생활과 관련된 사실 또는 사실로 보일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②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의 입장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 ③ 일반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으로 사정을 공개하게 되면 당사자가 불쾌해 하거나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 ④ 공개되었을 때 당사자의 명예나 신용을 침해하는 것 등은 피해야 한다. 사적 개인에 관한 위와 같은 정보들은 진실성을 증명한다고 해서 면책될 수는 없는 것이다. 18) 미국의 판례에 따르면 공공적 문제는 공무원(public official)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인데 공무원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직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나 관심과 관계가 크고 그에 대한 비판이 정부공무원과 같은 경우의 사람들에게까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Rosenblatt 사건 19)에서 공직자란 최소한 정부업무수행의 실질적 책임을 맡고 있거나 통제권을 가진 공무원의 위계구조에 소속되어 있는 자 또는 대중들로부터 그러한 구조 속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어 공무원의 범위는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로 확대되었고 대학 체육부의 감독, 저명한 경마조련사, 정당요원과 선거구 대의원,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편지배달부, 기자회견을 요청한 우편절도범, 연방교도소 탈주범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Gertz 사건 이후 공적 인물의 범위는 다시 축소되기 시작하여 지방사교계의 명사인 Firestone 부인을 공적 인물의 범위로부터 제외하는 판결이 나왔다.20) 공적 인물의 범위를 둘러싼 미국법원의 판례들이 공공성 판단을 우회하여 공적 인물의 업무로 측면접근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본 동경지방법판소는 보도내용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일 때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도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21) 일본의 판례는 주간문춘(소화 56년 8월 6일자)이 독자적인 취재에 의해 전일본권투협회장이 욕심이 많고 선수들을 혹사하고 착취해왔다는 기사를 공표하였다. 회장은 그 기사가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와 사죄광고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의 판결에서 동경지방법판소는 기사 중 소득은폐의 사실은 조세의 포탈행위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외의 적시사실도 고도의 반도의적 내지 반사회적 행위로서 원고의 인격적 특성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였다. 판례는 특히 공적 문제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선수의 육성, 관리가 공정히 행해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관해서 사회대중이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취재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한 것이다.일본에서 채택된 판례는 그들과 법률감정이 비슷한 우리나라에서 많은 시사를 준다. 즉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으로 보아 개인적 사생활이라 할지라도 공공성을 가지는 것은

기사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것일 때 쟁점은 오히려 공공성 판단이 아니라 진실성판단으로 넘어 가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르뽀기사의 문체나 표현양식에 대한 윤리적문제

르뽀기사는 기사의 내용이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갖는 문학적 표현에 의거하기 때문에 기사의 자연적이고 통상적인 의미가 등장인물의 명예나 신용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판례들은 한결같이 기사와 피해자의 직접적인 관련 및 기사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것을 요구하지만 르뽀기사 기록자는 우회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정인의 명예나 이익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언어적 폭력이 물리적 폭력의 단서가 되는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지칭하는 암묵적인 표현도 기록자에 의해 충분히 검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특히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은 기사의 내용과 형식, 신문의 판매부수, 소송절차의 상태 등이 공정한 재판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르뽀기록자는 자기 책임하에 사건을 최대한 공정하게 다루려고 애써야 할 것이다. 재판과 관련된 소문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소문은 대체로 알려지지 않은 사상에 의해 지어내진 다음,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마침내는 르뽀기록자에 의해 인쇄매체나 전파매체에 소개된다. 일단 매스 미디어에 실려진 이야기는 떠도는 상태보다 더욱 강한 형성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사를 포함한 법조인 모두에게 좀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르뽀기록자는 떠도는 이야기에 대해 찬성하는지 부인하는지 밝히지 않은 이상 기록자 자신도 믿었던 것으로 독자들에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소문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공정한 입장에 서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법적으로는 소문을 기사화했다고 해서 반드시 위법성을 구성하지 않는다. 소문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위헌이다. 또 공정한 보도의 특권은 개인의 평판을 보호한다는 원칙의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문의 허위성을 인식했을 때의 보도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Edwards 사건에서 22) 「보호되어야 할 공적 또는 사회적 이익은 공공집회와 공식적 절차에 관한 정보의 입수라는 공공의 이익이다. 그러므로 이 특권은 보도자가 이야기의 허위 여부를 인식했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합헌적이다. 그러나 사법적 절차에 관계되는 정보의 전파가 중대한 사회적 이익인 이상 기록자로서도 동등한 정도의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터무니 없는 소문이 널리 증폭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르뽀기록자로서 취할 수 있는 건전한 자세일 것이다.

IV. 맺음말

르뽀기사는 전통적인 보도기법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생동성과 심층성 및 역사성을 담을 수 있는 뉴 저널리즘적 양식이다. 그러나 르뽀기사는 일종의 문학적 장르를 저널리즘에 가미하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의 정확한 전달을 신화처럼 떠받드는 저널리즘 세계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르뽀기사를 포함하는 뉴 저널리즘도 사건을 보도하는 새로운 기술로서 허구적인 드라마기법을 도입했을 뿐이지 예술적인 초현실주의나 환타지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르뽀기사는 시각이 주관적이라는 비판자의 공격을 피 할 수는 없지만 그 점은 전통적인 보도기법이 객관성이라는 피상적

관찰로 일관하여 뉴 저널리즘 진영으로부터 비판 받는 것을 고려하면 피장파장인 셈이다. 오히려 르뽀기사는 특정한 관찰방법을 동원하여 실제의 사실과 더욱 부합되는 재현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할 만하다 이점이 오히려 르뽀기독자가 독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될 도덕적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독자들도 르뽀 기사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기록자의 시각의 독특성을 고려하여 사태를 살필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할 것이다. 르뽀기사는 그것이 실제하는 인물이나 집단과 관련된 접근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사법적 쟁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르뽀기독자는 인지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진실과 허위를 구별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차별지어 독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르뽀기독자는 흥미본위로 흘러 교언영색을 보태다 보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조명될 수 있으므로 언제나 공적인 보고자의 입장에서 떳떳한 자세로 독자 앞에 나서야 하는 동시에 보도의 대상이 된 특정 개인의 인간적 존엄이 무시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서도 가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보도에 있어서 주관성, 심층성이나 객관성, 피상성이 정도의 문제로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는 가치라는 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르뽀기사와 같은 보도기법이 저널리즘과 문학을 결합하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개발해 가고 있는 상황을 전진적인 시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르뽀유형의 기사들이 진정으로 인간중심적인 보도양식으로 정착하여 주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주

- 1) Edwin H. Ford, "The Art and Craft of the literary Journalist", in George F. Mott(ed), *New Survey of Journalism*, Barnes and Noble, New York, 1963, p.310.
- 2) James E. Murphy, *The New Journalism : Acritical Perspective*, Journalism Monographs, No .34, May, 1974, pp.16-17
- 3) James, E. Murphy, *앞의 책*, p.18.
- 4) Tom Wolfe, *Radical chic and Mau-Mauing the Flak-Catchers*, Bantam, New York, 1971, pp140-141 .
- 5) John Hersey, *The Algiers Motel Incident*, Bantam, New York, 1968, p.27.
- 6) Philip Elliot, "Press performance as political Ritual", Harry Christian(ed.), *The Sociology of Journalism and the press*, Sociological Review Monograph 2g, University of Keele, 1980, pp141-177
- 7) W. G. Bleyer, *Newspaper writing and Editing*, Houghton Mifflin, Boston, 1932, p.38
- 8) J. Hohenberg, *The Professional Journalist*, p64
- 9) M V. Charnley, *Reporting*,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1966, pp.19-22.
- 10) B.Wesley, *News Editing*, Houghton Mifflin, 1953 PP.335-336.
- 11) C. Macdougall,
- 12) H. Evans, *The Practice of Journalism*, Heinemann, U.K, 1963.
- 13) Stuart Hood, *Hood on Television*, Pluto press,1980, U.K.

- 14) S. M. Ali, "Depth news : A Model for a Third World Feature Agency", in Philip C. Horton(ed.),The Third World and Press Freedom, N .Y Praeger Publishers, 1978, PP.187-190.
- 15) J. Turow, "Local Television : Producing Soft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33, No.2, Spring, 1983, p.111.
- 16) Gillmor and J. Barren, Mass Communication Law-Cases and Comment (3rd ed.) , West publishing co., 1979, PP.259-261.
- 17) Cianci v New Times Publishing co., 639F.2d54, 1980.
- 18) 堀部政男, "명예,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동경대 출판회, 1983, PP 190-191
- 19) Rosenblatt v. Baer, 383, U.S. 75(1966).
- 20) Time Inc v. Firectone, 424 U.S. 448(1976) .
- 21) 동경지재, 소화 60년 1월 29일 판결, 소화 56년(7)제 11289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례 22)Edward v. National Audubon Society, Inc., 2d Cir., 1977.

- 고려대 불문학과, 서울대신문대학원, 고려대 대학원 (박사)
- 저술: 「공정도도의 사회윤리학」, 「매스컴과 현대사회」. 「세계선전전동사」(공저) 외
- 한재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